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글학교 지원 근거 구체화 등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7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교육원의 기능에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 지원 규정 ..	2
2. 재외공관의 장의 재외동포청장 보고 추가	5
3.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규정 ..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30.
3. 회 부 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보급,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지도,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글·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400여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Ⅲ. 검토의견

1. 한국교육원의 기능에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 지원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의 기능으로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에 더하여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한글학교에서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29조(교육원의 기능)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한글학교의 <u>교육활동 지원</u>	2. ----- <u>교육활동 및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 지원</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교육원의 기능 중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제29조제2호에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에서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으로 변경함.

이는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에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하는 것으로,¹⁾ 현행법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교육원을 통해 교재보급, 장학지도, 교육과정 컨설팅,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근거로 한글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한글학교의 지원사항을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이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교할 때, 개정안에 추가된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전문성 향상’은 범위를 특정하고 있어 규정 수준이 상이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특정 내용을 지원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규정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세부내용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교육원 이외에도 한글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을 통해 한글학교 운영비, 교사 연수, 콘텐츠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한글학교에 대한 교육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적극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한글학교 강사 외에 행정인력 등 모든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 향상까지 지원해야 하므로, 한정된 교육원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글학교에 대한 ‘교육 전문성 향상 지원’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재외동포청은 교육원이 없는 공관이 많고 공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글학교 구성원(강사)에 대한 지원을 법률상 교육원의 고유 기능으로 규정하기보다 여건에 따라 공관 및 재외동포청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재외공관의 장의 재외동포청장 보고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함)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교육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재외동포청장에 대한 보고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폐지 사실이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 (생략)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u>교육부장관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u>교육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30조제2항에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만 보고하던 것에서, 교육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보고 대상에 재외동포청장을 추가함.

이는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재외교육기관 지원, 한글학교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²⁾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폐지 사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행 「정부조직법」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³⁾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적절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재외동포청 직제」

제10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재외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8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동포교육문화지원과·차세대동포과 및 동포경제지원과를 둔다.

⑤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
2. 한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기획 및 시행 총괄

3) 「정부조직법」

제33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재외동포청은 재외교육기관 중 한글 학교는 재외동포청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행 절차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 개정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더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규정함으로써, 한글학교에서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국고지원)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u>운영과 사업에</u>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 --- <u>운영 및 사업, 교육환경 개선에</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고지원을 규정한 제31조에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사항을 ‘운영과 사업’에서 ‘운영 및 사업, 교육환경 개선’으로 변경함.

해당 조항은 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법에 근거하여,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대수선비 등이 지원되고 있고, 한글학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에서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운영과 사업’을 근거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특정 내용을 지원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규정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세부내용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법의 규정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포괄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에 대수선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지원 내용을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국고지원 범위

가 소극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청이 지급하는 한글학교 지원금의 내용을 한글학교를 직접 명시하고 지원금 명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